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沈在坤사무국장

사실조사에서 피해입증까지

환경분쟁의 모든것 맡아줍니다

■편집부

● 비상설기구이긴 하나 기존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성장위주의 경제개발로 국민생활수준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나, 그 반면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자연환경은 파괴되어 왔습니다.

이에대해 국민들은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지적하신것처럼, 종전에도 구 환경보전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비상설기구로서 전담공무원 등이 없어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환경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 이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아니라 사법재판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제도에 의한 분쟁조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와같이 사법재판에만 의존하던 분쟁문제를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기관으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종전의 환경분쟁조정제도와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새로 제정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은 앞서 말씀드린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상설기구로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피해자는 누구나 쉽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 조정신청내용을 단계화하고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 했습니다.

즉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분쟁의 재정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시·도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구역내의 분쟁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환경오염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절차를 소개해 주십시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피해대상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 수질, 해양, 토양오염, 소음·진동 및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이나 재산상의 피해이며 그 절차는 알선·조정·재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알선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화해계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이란 알선이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조사를 실시,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락할 때는 물론이고 30일내에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안대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재정이란 알선과 조정이 곤란한 분쟁에 대한 피해책임의 유무 및 그 정도를 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이는 민사소송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결정사항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에 불복하는 소

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재정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된 효과가 발생합니다.

● 이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이 있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환경피해의 사실조사와 원인규명을 전담하기 위한 심사관 5인이 있으며,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관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분쟁의 조정자로선 중립성과 독립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위원회도 환경처산하의 행정기관인데, 독립성의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분쟁의 조정자로서는 중립성과 독립성이 전제돼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선 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의 직제로 두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도 3년으로 하여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의 자격요건도 환경과 관련된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쌓은 분으로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경우 1급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 또는 2—3급으로 3년이상 재직한자라야 합니다.

민간의 경우는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또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또는 환경관계 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정에 있어서 재정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이 특정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거나 담당을 회피할 수 있는 제척 또는 기피 및 회피제도를 두어 조정절차에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2—5 벽산빌딩 19층
전화 : 727—6191~5